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78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문금주·권칠승·이학영

한민수 · 김문수 · 신영대

문정복 · 황정아 · 문대림

주철현 • 이정문 • 서삼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·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,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·보관 및 가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 서 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,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 비 용을 절감하고 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,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·가공·유통, 임목의 수확 및 수집·가공·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 사업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8).

법률 제 호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의2 중 "임산물의 판매·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"을 "임업"으로 한다.

제86조의8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・가공・유통 사업
- 5. 임목의 수확 및 수집 · 가공 · 유통 사업
- 6. 자연휴양림, 수목장림(樹木葬林), 숲속야영장,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관련 시설의 조성·운영 사업
- 7. 해외 조림(造林) · 육림 · 벌채 및 이와 관련된 가공 · 유통 사업
- 8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 분야와 관련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6조의2(목적) 조합공동사업법	제86조의2(목적)		
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			
여 임산물의 판매・유통 등과	- <u>임업</u>		
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			
<u>임업</u> 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			
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			
을 목적으로 한다.			
제86조의8(사업) 조합공동사업법	제86조의8(사업)		
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			
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			
또는 일부를 수행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소		
	<u>득 임산물의 수집·가공·유</u>		
	<u>통 사업</u>		
<u> <신 설></u>	5.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		
	<u>• 유통 사업</u>		
<u> <신 설></u>	6. 자연휴양림, 수목장림(樹木		
	葬林), 숲속야영장, 산림레포		
	츠시설 등 산림 관련 시설의		
	<u>조성·운영 사업</u>		
<u> <신 설></u>	7. 해외 조림(造林)・육림・벌		
	채 및 이와 관련된 가공・유		

<u><신 설></u>	<u>통 사업</u> 8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
	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
	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
	지 발전사업 중 산림 분야와
	<u>관련된 사업</u>
<u>4.·5.</u> (생 략)	<u>9.·10.</u> (현행 제4호 및 제5호
	와 같음)